

제341회 정례회
2015.7.14. (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7. 14 (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우양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5년 6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3일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우양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체험마을등의 지원 및 지원내용(안 제4조, 안 제5조)
- 체험마을 사업 활성화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안 제8조)
- 시장·군수가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신선기)

-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학교,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농촌마을이 1사 1촌 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2.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3.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장려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에 제2항제3호를 포함시킬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 등”이라 한다)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도지사는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① 도지사는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이 추천한 체험마을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체험마을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지원조례 제7조(전문가의 자문),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의 근거로 필요한 비용발생

3. 관련조문

- 조례안 참고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보험료·교육비 등

나. 추계의 전제 : 인건비(120만×12개월×30마을), 보험(안전·화재/38백만), 교육비(28백만)

다. 추 계 결 과 : 16년~20년까지 총2,490백만원(도비430백만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인건비(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보험·교육비(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부담20%)

마. 지원계획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인건비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보험·교육 등	55개소	55개소	55개소	55개소	55개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2,490	498	498	498	498	498
인건비·보험·교육	2,490	498	498	498	498	498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김한주(☎ 220-3510)